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8. 25.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TI =1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전 화	031-8008-5422
충청남도	과 장	이 동 유		041-635-2640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돈 해		041-635-4296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조 경 숙		044-202-1740
특별전담팀	담 당 자	오 승 민		044-202-1743
국토교통부	과 장	나 기 호		044-201-3823
버스정책과	담 당 자	김 동 규		044-201-38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코로나19 대응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지금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하여 가족, 친구와의 모임, 여행과 방문 등을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방역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을 방해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충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8월 28일(금) 부터 2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단위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이동형 검체 채취부스)'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단위 대규모 선별진료소'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북상이 예보된 태풍 '바비'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어제(8.24.) 실시하고, 음압텐트, 몽골텐트 등 시설 보강 필요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태풍 진행단계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8월 25일(화)부터 8월 26일(수)까지 콜센터 60개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PC방 등 집합금지 시설과 영화관 등 집합제한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입도객*에 대해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용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갈지자(지그재그) 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 승객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의 밀접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다.
- * 연안여객 터미널, 삼목 선착장, 방아머리 선착장
-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긴급돌봄, 1:1 심리·재활치료 프로 그램만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경기도 내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결혼식장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원스톱)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미해결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와 협의·중재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추적 및 진단검사 등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와 함께 8월 21일(금)부터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긴급점검을 실시(8.23.)한 결과, 총 3,113개소 중 2,362개소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다. 나머지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대응 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한 전세버스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이동하였으나,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또한,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전세버스를 통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
-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 출입명부를 활용하여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 *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목적의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임차 전세버스**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비대상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이미 전북(8.20), 경기도·대전(8.21), 충남(8.22), 경남(8.23), 부산(8.25)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처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 * 「여객자동차법」시행령 별표3











3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우선 지난 금요일(8.21)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의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환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병상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 또는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있다.
 - 또한,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어제(8.24)부터 **중환자 병실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우선 이번 주까지 2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수도권 대학병원과 협의가 완료되어 준비 중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8월 24일(월) 20시 기준 **총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총 입소 규모는 1,605명이며 **603명이 입소가 가**능하다.
 - 금주에 추가 개소하는 4개 시설을 포함하면 총 입소 규모는 2천 6백 명 수준으로 확대되며, 이후 4천 명 규모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어제(8.24) 수도권 외의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에 대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에 시도별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4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14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13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4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37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8.24)는 출근, 개인농장 방문 등을 사유로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하여, 이 중 **5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5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8월 23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2,352개소, ▲유흥 시설 3,645개소 등 36개 분야 총 1만7367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032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44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66반, 751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3. 국민 행동 지침
 - 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 이용 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현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O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O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